



개구부 덮개를 치우던 중 개구부로 추락



수처리시설공사 현장에서 재해자(펌프카 운전원)가 콘크리트 슬라브 바닥에 있는 개구부(1.0×1.0m) 덮개(유로폼: 1,200mm×600mm×2장)를 바닥에 적치된 유로폼으로 오인하고 치우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아래 콘크리트 바닥(7.5m)으로 추락, 사망



발생 원인

- 개구부 덮개 고정 상태 불량
 - 추락위험이 있는 콘크리트 슬라브 바닥 개구부 덮개로 거푸집(유로폼, 2장)을 사용하면서 고정하지 않음
- 개구부 및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 미부착

안전작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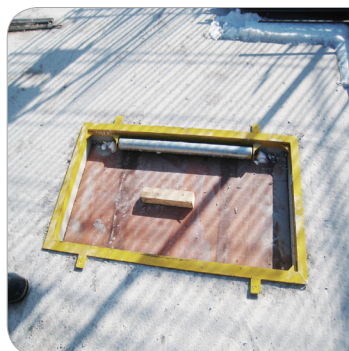
TIP

1 개구부 덮개 고정 철저

- 근로자가 작업 또는 상시 이동하는 콘크리트 슬라브 바닥에 추락위험이 있는 바닥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튼튼한 구조로 뒤집히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·설치 철저

2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

- 현장 외부 근로자 등에게 개구부 및 추락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“추락위험” 경고 표지판 부착



개구부 덮개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(개구부 등의 방호조치)



개구부 덮개를 치우던 중 개구부로 추락

개구부 방호조치 시에는 추락위험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세요!

